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고용노동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5. 1. 1.부터 시행 예정인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직업분류표(통계청 고시 제2024-328호)의 변경된 직업명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11. 18. ~ 12. 12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7조제3호 중 “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, 교육 교구 방문강사, 그 밖에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”을 “세분류에 따른 학습·교구 관련 방문강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택배원”을 “택배원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 그 외 배달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택배원”을 “늘찬배달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1호 중 “세세분류”를 “세분류”로, “방문점검원”을 “방문 점검원”으로 한다.

제96조의2제2호의 나목부터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나.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
- 다.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종사자
- 라. 텔레마케터
- 마. 배달원
- 바. 청소 관련 종사자
- 사. 아파트 경비원
- 아. 그 외 건물 관리원 중 건물 경비원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7조(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 위 등)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 한다.	제67조(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 위 등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(이하 “한국표 준직업분류표”라 한다)의 <u>세</u> <u>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</u> <u>사, 교육 교구 방문강사, 그 밖</u> <u>에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</u> <u>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</u> <u>가르치는 사람</u>	3. ----- ----- ----- <u>세분</u> <u>류에 따른 학습·교구 관련</u> <u>방문강사</u>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5.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 류에 따른 <u>택배원</u> 으로서 택배 사업(소화물을 집화·수송 과 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)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	5. ----- ----- <u>택배원 또는 세세분</u> <u>류에 따른 그 외 배달원</u> ----- ----- -----
6.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 류에 따른 <u>택배원</u> 으로서 고용	6. ----- ----- <u>늘찬배달원</u> -----

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. ~ 10. (생략) 11.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<u>세세분류</u>에 따른 대여 제품 <u>방문</u> <u>점검원</u> 12. ~ 14. (생략) 제96조의2(휴게시설 설치·관리 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)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“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. 1. (생략)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(「통계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다)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(건설업은 제	----- ----- ----- ----- 7. ~ 10. (현행과 같음) 11. ----- <u>세분류</u>----- <u>방문</u> <u>점검원</u> 12. ~ 14. (현행과 같음) 제96조의2(휴게시설 설치·관리 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---	--

외한다) 가. (생 략) <u>나. 돌봄 서비스 종사원</u> <u>다. 텔레마케터</u> <u>라. 배달원</u> <u>마.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</u> <u>바. 아파트 경비원</u> <u>사. 건물 경비원</u> <u><신 설></u>	----- 가. (현행과 같음) <u>나.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</u> <u>다.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종사</u> <u>자</u> <u>라. 텔레마케터</u> <u>마. 배달원</u> <u>바. 청소 관련 종사자</u> <u>사. 아파트 경비원</u> <u>아. 그 외 건물 관리원 중 건</u> <u>물 경비원</u>
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8997